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40 호 2022. 4. 21.(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84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87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88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89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90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92호[도로명주소 변경·폐지 고시]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93호[하천점용 (변경)허가 고시] 1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94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13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525호[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1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534호[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538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 31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84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주)은풍산업개발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용암길72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795-286번지	하천의 명칭	○ 매곡천
점용 내용	○ 공작물의 신축 (매곡천 낙차공 설치공사 현장 사무실용 가설건축물 설치)	점용 면적	○ 18m ²
점용 기간	○ 2022. 4. 20. ~ 2022. 7. 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8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2. 4. 18.
- 2. 점용·사용의 목적 : 식물의 식재(경작)
-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대안동1036번지 일원
-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538m²
 - 나. 기 간 : 2022. 4. 18. ~ 2026. 5. 31.
-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김*환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 구 신*로*17 *1-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8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1. 4. 18.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통신용 콘크리트 전주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어물동 1240-120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1) 일시: 1.44m²
 - 2) 영구: 1.00m²
 - 나. 기 간
 - 1) 2022. 4. 18. ~ 2022. 4. 20.
 - 2) 2022. 4. 21. ~ 2026.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지유*러스 대*자 *현*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구 *양대로 *9* *2층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89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명춘23길 8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어물동1248번지	하천의 명칭	○ 운곡천
점용 내용	○ 콘크리트전주 설치 및 철거(10본)	점용 면적	○ 일시: 8.40m ² ○ 계속: 1.52m ²
점용 기간	○ 일시: 2022. 4. 18. ~ 2022. 4. 20. ○ 계속: 2022. 4. 21. ~ 2026. 12. 3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9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76-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계획 승인

가. 사업시행자

- 1) 사업의 명칭: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2) 사업주체
 - 가) 성 명: 네오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이운학
 - 나) 주 소: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여우고개로 7
- 3)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76-4번지 일원

나.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주 체	네오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이운학	
사 업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76-4번지 일원	
대 지 면 적	18,480.8㎡	
건 축 면 적	4,531.1161㎡	
연 면 적	68,303.4012㎡	
건 폐 율	24.52%	
용 적 륜	248.13%	
동 수(주/부)	주: 5개동, 부속: 14개동	
세 대 수	352세대	
주 택 형 별	(민간)분양아파트	
사 업 비	193,193,500천원	

2. 사업시행기간

- 2022. 06. 15. ~ 2025. 02. 28.

3.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포함합니다. (해당분만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4. 승인관련서류: 울산광역시 북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78	신천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북구 신천동 476-4번지 일원	-	증 24,026.9	24,026.9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78	신천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24,026.9m ²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일단의 주택단지의 체계적·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하여 구역 결정

I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4,026.9	-	24,026.9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4,026.9	-	24,026.9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1	379	5,559.1	-	-	-	2	303	4,607.1	1	76	952
중로	2	336	5,181.3	-	-	-	1	260	4,229.3	1	76	952
소로	1	43	377.8	-	-	-	1	43	377.8	-	-	-

(나)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신설	중로	2	577	15	국지 도로	260	대로 3-40	중로 3-474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474	11	국지 도로	76	신천동 229-7	신천동 229-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280	6	국지 도로	180	대로 3-40	소로 2-56	일반 도로	-	2000.03.10 (울고 33호)	
변경	소로	2	669	8	국지 도로	43	중로 2-577	소로 3-279	일반 도로	-		노선축소 노폭확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2-5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신설 (B=15m, L=26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단지 주변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선신설
-	중로3-4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신설 (B=11m, L=76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단지 주변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선신설
소로3-280	소로2-6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축소 및 노폭확장 (B=6m→8m, L=180m→43m) 중점 표기 오기 정정 : 소로2-56 →소로3-2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2-577호선 신설에 따른 일부구간 노선 축소 및 폭원확장과 중점 표기(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94호) 오기 정정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 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합	계		18,480.8	-	-	18,480.8	-
신설	1	1B	18,480.8	1	북구 신천동 477-13번지 일원	18,480.8	공동주택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가구 또는 획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1	1B-1	가구 및 획지 신설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관리를 위해 가구 및 획지 번호 부여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신설	1	1B-1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A)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기준/허용)	200%이하 / 250%이하
			높이	75m(24층)이하
			배치	-
			형태	-
			건축선	-

■ 건축물의 용도

구분	지정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A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용적률완화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계획대상지												
<p>· 3-3-2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완화되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아래와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일반주거지역</th> <th>기준용적률(%)</th> <th>허용용적률(%)</th> </tr> </thead> <tbody> <tr> <td>제1종</td> <td>150</td> <td>150</td> </tr> <tr> <td>제2종</td> <td>200</td> <td>250</td> </tr> <tr> <td>제3종</td> <td>250</td> <td>300</td> </tr> </tbody> </table>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제1종	150	150	제2종	200	250	제3종	250	300	<p>1. 무상귀속 : 1,376.4㎡ 2. 신설 공공시설 : 5,546.1㎡ - 도로 : 5,546.1㎡ 3. 완화용적률 = 변경전 용적률 + [1.5×(공공시설부지×공공시설부지 용적률)÷실사용부지] = 200+[1.5×(5,546.1-1,376.4)×200]÷18,480.8 = 267.69%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이 250%이하이므로 최대 허용용적률은 250%이하로 적용</p>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제1종	150	150											
제2종	200	250											
제3종	250	300											

■ 건축물의 용도

구분	지정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A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차량진출입 허용구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신설	1	1B-1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2개소)	중로 2-577호선변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지구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 총괄도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6.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7.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Ⅳ.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게재생략

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92호

도로명주소 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변경

지번주소	종전도로명주소	변경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진장명촌지구 61B 4L	염포로 198	염포로 196	2022. 4. 21.	주소사용편의를 위한 변경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염포로 196	진장동 894	2022. 4. 21.	건축물 멸실
두부곡16길 5-3	연암동 1188	2022. 4. 21.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4. 2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안내사항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93호

하천점용 (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주) 효성		
주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4번길 13-4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17-12번지	하천의 명칭	○ 동천
점용 내용	○ 공작물의 신축(오수관로 매설)	점용 면적	○ 11m ²
점용 기간	○ 당초 : 2017. 1. 20. ~ 2022. 4. 30. ○ 변경 : 2017. 1. 20. ~ 2022. 5. 28.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94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명춘23길 8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가대동908-17번지	하천의 명칭	○ 성안천
점용 내용	○ 콘크리트전주 설치(2본)	점용 면적	○ 일시: 18m ² ○ 계속: 0.393m ²
점용 기간	○ 일시: 2022. 4. 22. ~ 2022. 4. 23. ○ 계속: 2022. 4. 24. ~ 2026.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525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단계별집행계획 총괄

○ 시설별 총괄현황

(단위: m², 백만원)

구분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장기미집행)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계	108	298,479	821,090	14	139,967	52,445	94	158,512	768,645
도로	98	191,919	623,964	10	50,324	19,412	88	141,595	604,552
공원	2	4,208	12,424	1	454	806	1	3,754	11,618
학교	1	9,510	136,677	-	-	-	1	9,510	136,677
주차장	4	5,507	18,518	1	1,954	2,975	3	3,553	15,543
기타	3	87,335	29,507	2	87,235	29,252	1	100	255

* 기타: 공공공지,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연차별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2022~2024)	(2025~2026)	(2027~)
계	821,090	55,154	2,500	763,436
도로	623,964	22,121	2,500	599,343
공원	12,424	806	-	11,618
학교	136,677	-	-	136,677
주차장	18,518	2,975	-	15,543
기타	29,507	29,252	-	255

* 면적시설: 공공공지,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조서: “별첨”

3. 사업시행기간

가. 1단계 : 2022년 ~ 2024년

나. 2-1단계: 2025년 ~ 2026년

다. 2-2단계: 2027년 이후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052-241-79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사업개요	집행구분	최초결정일	면적(㎡)			총사업비(백만원)	재원조달계획(백만원)							단계별사업비(백만원)			
						합계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합계	국비	시비	지방채	공기업	구군비	민간	합계	1단계(2022~2024)	2-1단계(2025~2026)	2-2단계(2027이후)
합계						298,479	9,509	288,970	821,090	821,090	15,523	11,218	1,150	-	792,835	364	821,090	55,154	2,500	763,436
1	도로	중로2-19	L=146m	부분집행	'05. 11. 10.	2,628.0	1,298	1,330	501	501					501	501	-	-	501	
2	도로	중로2-76	L=1023m	미집행	'04. 12. 4.	15,345.0	-	15,345	6,788	6,788	6,668				120	6,788	6,788	-	-	
3	도로	중로2-349	L=177m	미집행	'07. 9. 20.	3,630.0	-	3,630	850	850					850	850	-	-	850	
4	도로	중로2-468	L=34m	미집행	'11. 1. 27.	510.0	-	510	1,109	1,109					1,109	1,109	-	-	1,109	
5	도로	중로3-262	L=800m	미집행	'07. 11. 29.	9,600.0	-	9,600	2,333	2,333					2,333	2,333	-	-	2,333	
6	도로	소로1-34	L=188m	미집행	'07. 11. 29.	1,880.0	-	1,880	1,426	1,426					1,426	1,426	-	-	1,426	
7	도로	소로1-35	L=230m	미집행	'07. 11. 29.	2,300.0	-	2,300	1,832	1,832					1,832	1,832	-	-	1,832	
8	도로	소로1-105	L=2408m	부분집행	'14. 8. 7.	24,221.0	3,809	20,412	5,000	5,000					5,000	5,000	5,000	-	-	
9	도로	소로1-141	L=248m	미집행	'20. 12. 24.	2,480.0	-	2,480	364	364					-	364	364	364	-	-
10	도로	소로1-142	L=360m	미집행	'20. 12. 24.	3,600.0	-	3,600	3,500	3,500					3,500	3,500	3,500	-	-	
11	도로	소로2-14	L=243m	미집행	'12. 2. 16.	1,944.0	-	1,944	2,865	2,865					2,865	2,865	-	-	2,865	
12	도로	소로2-21	L=412m	미집행	'05. 3. 24.	3,296.0	-	3,296	20,866	20,866					20,866	20,866	-	-	20,866	
13	도로	소로2-22	L=52m	미집행	'05. 3. 24.	416.0	-	416	2,744	2,744					2,744	2,744	-	-	2,744	
14	도로	소로2-23	L=324m	미집행	'05. 3. 24.	2,592.0	-	2,592	18,299	18,299					18,299	18,299	-	-	18,299	
15	도로	소로2-24	L=310m	미집행	'05. 3. 24.	2,480.0	-	2,480	13,480	13,480					13,480	13,480	-	-	13,480	
16	도로	소로2-30	L=440m	미집행	'05. 3. 24.	3,520.0	-	3,520	13,646	13,646					13,646	13,646	-	-	13,646	
17	도로	소로2-32	L=179m	미집행	'05. 3. 24.	1,432.0	-	1,432	6,374	6,374					6,374	6,374	-	-	6,374	
18	도로	소로2-34	L=174m	미집행	'05. 3. 24.	1,392.0	-	1,392	10,590	10,590					10,590	10,590	-	-	10,590	
19	도로	소로2-36	L=146m	미집행	'05. 3. 24.	1,168.0	-	1,168	10,187	10,187					10,187	10,187	-	-	10,187	
20	도로	소로2-40	L=122m	미집행	'07. 11. 29.	976.0	-	976	8,814	8,814					8,814	8,814	-	-	8,814	
21	도로	소로2-46	L=104m	미집행	'05. 3. 24.	832.0	-	832	7,962	7,962					7,962	7,962	-	-	7,962	
22	도로	소로2-47	L=194m	미집행	'05. 3. 24.	1,552.0	-	1,552	2,500	2,500	2,000				500	2,500	-	2,500	-	
23	도로	소로2-48	L=182m	미집행	'05. 3. 24.	1,456.0	-	1,456	6,643	6,643					6,643	6,643	-	-	6,643	
24	도로	소로2-51	L=67m	미집행	'05. 3. 24.	536.0	-	536	895	895					895	895	-	-	895	
25	도로	소로2-52	L=47m	미집행	'05. 3. 24.	376.0	-	376	738	738					738	738	-	-	738	
26	도로	소로2-197	L=81m	미집행	'05. 3. 24.	648.0	-	648	1,418	1,418					1,418	1,418	-	-	1,418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사업개요	집행구분	최초결정일	면적(m ²)			총사업비 (백만원)	재원조달계획(백만원)						단계별사업비(백만원)			
						합계	집행 면적	미집행 면적		합계	국비	시비	지방채	공기업	구군비	민간	합계	1단계 (2022~2024)	2-1단계 (2025~2026)
27	도로	소로2-326	L=352m	미집행	'05. 3. 24.	2,816.0	-	2,816	8,909	8,909					8,909	8,909	-	-	8,909
28	도로	소로2-327	L=286m	미집행	'05. 3. 24.	2,288.0	-	2,288	6,966	6,966					6,966	6,966	-	-	6,966
29	도로	소로2-341	L=134m	미집행	'09. 4. 9.	1,072.0	-	1,072	26,204	26,204					26,204	26,204	-	-	26,204
30	도로	소로2-342	L=249m	미집행	'09. 4. 9.	1,992.0	-	1,992	30,251	30,251					30,251	30,251	-	-	30,251
31	도로	소로2-343	L=130m	미집행	'09. 4. 9.	1,040.0	-	1,040	9,118	9,118					9,118	9,118	-	-	9,118
32	도로	소로2-363	L=145m	미집행	'11. 8. 4.	1,160.0	-	1,160	1,694	1,694					1,694	1,694	-	-	1,694
33	도로	소로2-384	L=241m	미집행	'05. 3. 24.	1,928.0	-	1,928	17,446	17,446					17,446	17,446	-	-	17,446
34	도로	소로2-385	L=52m	미집행	'05. 3. 24.	416.0	-	416	4,788	4,788					4,788	4,788	-	-	4,788
35	도로	소로2-386	L=102m	부분집행	'05. 3. 24.	816.0	368	448	5,854	5,854					5,854	5,854	-	-	5,854
36	도로	소로2-387	L=306m	부분집행	'05. 3. 24.	2,448.0	648	1,800	14,808	14,808					14,808	14,808	-	-	14,808
37	도로	소로2-388	L=46m	미집행	'05. 3. 24.	368.0	-	368	4,526	4,526					4,526	4,526	-	-	4,526
38	도로	소로2-389	L=164m	미집행	'05. 3. 24.	1,312.0	-	1,312	8,488	8,488					8,488	8,488	-	-	8,488
39	도로	소로2-390	L=196m	미집행	'05. 3. 24.	1,568.0	-	1,568	10,439	10,439					10,439	10,439	-	-	10,439
40	도로	소로2-610	L=84m	미집행	'13. 4. 4.	672.0	-	672	981	981					981	981	-	-	981
41	도로	소로2-637	L=62m	미집행	'17. 12. 28.	496.0	-	496	724	724					724	724	-	-	724
42	도로	소로2-657	L=414m	미집행	'20. 12. 24.	4,140.0	2,070	2,070	143	143	75				68	143	143	-	-
43	도로	소로3-6	L=1045m	미집행	'03. 10. 23.	6,270.0	-	6,270	9,583	9,583					9,583	9,583	-	-	9,583
44	도로	소로3-8	L=86m	미집행	'05. 3. 24.	516.0	-	516	1,321	1,321					1,321	1,321	-	-	1,321
45	도로	소로3-9	L=171m	미집행	'05. 3. 24.	1,026.0	-	1,026	4,933	4,933					4,933	4,933	-	-	4,933
46	도로	소로3-10	L=116m	미집행	'05. 3. 24.	696.0	-	696	2,873	2,873					2,873	2,873	-	-	2,873
47	도로	소로3-11	L=296m	미집행	'05. 3. 24.	1,776.0	-	1,776	8,680	8,680					8,680	8,680	-	-	8,680
48	도로	소로3-12	L=202m	미집행	'05. 3. 24.	1,212.0	-	1,212	7,168	7,168					7,168	7,168	-	-	7,168
49	도로	소로3-13	L=156m	미집행	'05. 3. 24.	936.0	-	936	7,790	7,790					7,790	7,790	-	-	7,790
50	도로	소로3-14	L=168m	부분집행	'05. 3. 24.	1,008.0	648	360	995	995					995	995	-	-	995
51	도로	소로3-16	L=172m	미집행	'05. 3. 24.	1,032.0	-	1,032	5,927	5,927					-	5,927	-	-	5,927
52	도로	소로3-17	L=224m	미집행	'05. 3. 24.	1,344.0	-	1,344	5,461	5,461					5,461	5,461	-	-	5,461
53	도로	소로3-18	L=96m	미집행	'05. 3. 24.	576.0	-	576	3,143	3,143					3,143	3,143	-	-	3,143
54	도로	소로3-19	L=260m	미집행	'05. 3. 24.	1,560.0	-	1,560	8,483	8,483					8,483	8,483	-	-	8,483
55	도로	소로3-22	L=505m	미집행	'05. 3. 24.	4,523.0	-	4,523	7,765	7,765					7,765	7,765	-	-	7,765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사업개요	집행구분	최초결정일	면적(m ²)			총사업비 (백만원)	재원조달계획(백만원)							단계별사업비(백만원)			
						합계	집행 면적	미집행 면적		합계	국비	시비	지방채	공기업	구군비	민간	합계	1단계 (2022~2024)	2-1단계 (2025~2026)	2-2단계 (2027이후)
56	도로	소로3-23	L=266m	미집행	'05. 3. 24.	1,596.0	-	1,596	10,418	10,418					10,418	10,418	-	-	10,418	
57	도로	소로3-24	L=106m	미집행	'05. 3. 24.	636.0	-	636	970	970					970	970	-	-	970	
58	도로	소로3-26	L=165m	미집행	'05. 3. 24.	990.0	-	990	2,735	2,735					2,735	2,735	-	-	2,735	
59	도로	소로3-45	L=156m	미집행	'05. 3. 24.	936.0	-	936	6,782	6,782					6,782	6,782	-	-	6,782	
60	도로	소로3-46	L=156m	미집행	'05. 3. 24.	936.0	-	936	2,109	2,109					2,109	2,109	-	-	2,109	
61	도로	소로3-47	L=148m	미집행	'05. 3. 24.	888.0	-	888	2,565	2,565					2,565	2,565	-	-	2,565	
62	도로	소로3-48	L=128m	미집행	'05. 3. 24.	768.0	-	768	3,065	3,065					3,065	3,065	-	-	3,065	
63	도로	소로3-49	L=70m	미집행	'05. 3. 24.	420.0	-	420	1,874	1,874					1,874	1,874	-	-	1,874	
64	도로	소로3-51	L=272m	미집행	'05. 3. 24.	1,632.0	-	1,632	2,951	2,951					2,951	2,951	-	-	2,951	
65	도로	소로3-52	L=108m	미집행	'05. 3. 24.	648.0	-	648	6,417	6,417					6,417	6,417	-	-	6,417	
66	도로	소로3-53	L=1887m	미집행	'21. 12. 23.	11,319.0	-	11,319	2,500	2,500	2,250				250	2,500	2,500	-	-	
67	도로	소로3-54	L=66m	미집행	'05. 3. 24.	396.0	-	396	6,699	6,699					6,699	6,699	-	-	6,699	
68	도로	소로3-55	L=58m	미집행	'05. 3. 24.	348.0	-	348	925	925					925	925	-	-	925	
69	도로	소로3-56	L=152m	미집행	'05. 3. 24.	912.0	-	912	8,538	8,538					8,538	8,538	-	-	8,538	
70	도로	소로3-57	L=372m	미집행	'05. 3. 24.	2,232.0	-	2,232	9,350	9,350					9,350	9,350	-	-	9,350	
71	도로	소로3-58	L=222m	미집행	'05. 3. 24.	1,332.0	-	1,332	13,146	13,146					13,146	13,146	-	-	13,146	
72	도로	소로3-136	L=28m	미집행	'07. 11. 29.	212.8	-	212.8	402	402					402	402	-	-	402	
73	도로	소로3-176	L=272m	미집행	'05. 3. 24.	1,632.0	-	1,632	8,597	8,597					8,597	8,597	-	-	8,597	
74	도로	소로3-177	L=96m	미집행	'05. 3. 24.	576.0	-	576	2,496	2,496					2,496	2,496	-	-	2,496	
75	도로	소로3-178	L=184m	미집행	'05. 3. 24.	1,104.0	-	1,104	11,775	11,775					11,775	11,775	-	-	11,775	
76	도로	소로3-181	L=136m	미집행	'05. 3. 24.	816.0	-	816	6,603	6,603					6,603	6,603	-	-	6,603	
77	도로	소로3-182	L=72m	미집행	'05. 3. 24.	432.0	-	432	4,495	4,495					4,495	4,495	-	-	4,495	
78	도로	소로3-183	L=130m	미집행	'05. 3. 24.	780.0	-	780	5,061	5,061					5,061	5,061	-	-	5,061	
79	도로	소로3-184	L=254m	미집행	'05. 3. 24.	1,524.0	-	1,524	10,567	10,567					10,567	10,567	-	-	10,567	
80	도로	소로3-185	L=56m	미집행	'05. 3. 24.	336.0	-	336	4,548	4,548					4,548	4,548	-	-	4,548	
81	도로	소로3-186	L=152m	미집행	'05. 3. 24.	912.0	-	912	8,341	8,341					8,341	8,341	-	-	8,341	
82	도로	소로3-187	L=238m	미집행	'05. 3. 24.	1,470.0	-	1,470	500	500					500	500	500	-	-	
83	도로	소로3-188	L=116m	미집행	'05. 3. 24.	696.0	-	696	4,128	4,128					4,128	4,128	-	-	4,128	
84	도로	소로3-189	L=278m	미집행	'05. 3. 24.	1,668.0	-	1,668	11,973	11,973					11,973	11,973	-	-	11,973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사업개요	집행구분	최초결정일	면적(m ²)			총사업비 (백만원)	재원조달계획(백만원)							단계별사업비(백만원)					
						합계	집행 면적	미집행 면적		합계	국비	시비	지방채	공기업	구군비	민간	합계	1단계 (2022~2024)	2-1단계 (2025~2026)	2-2단계 (2027이후)		
85	도로	소로3-190	L=586m	미집행	'05. 3. 24.	3,516.0	-	3,516	17,197	17,197					17,197				17,197	-	-	17,197
86	도로	소로3-191	L=166m	미집행	'05. 3. 24.	996.0	-	996	4,718	4,718					4,718				4,718	-	-	4,718
87	도로	소로3-192	L=82m	미집행	'05. 3. 24.	492.0	-	492	3,939	3,939					3,939				3,939	-	-	3,939
88	도로	소로3-193	L=102m	미집행	'05. 3. 24.	612.0	-	612	3,191	3,191					3,191				3,191	-	-	3,191
89	도로	소로3-194	L=153m	미집행	'05. 3. 24.	918.0	-	918	9,970	9,970					9,970				9,970	-	-	9,970
90	도로	소로3-195	L=42m	미집행	'05. 3. 24.	252.0	-	252	2,505	2,505					2,505				2,505	-	-	2,505
91	도로	소로3-196	L=85m	미집행	'09. 11. 19.	510.0	-	510	4,344	4,344					4,344				4,344	-	-	4,344
92	도로	소로3-197	L=298m	미집행	'05. 3. 24.	1,788.0	-	1,788	7,146	7,146					7,146				7,146	-	-	7,146
93	도로	소로3-198	L=74m	미집행	'05. 3. 24.	444.0	-	444	5,683	5,683					5,683				5,683	-	-	5,683
94	도로	소로3-199	L=206m	미집행	'05. 3. 24.	1,236.0	-	1,236	12,057	12,057					12,057				12,057	-	-	12,057
95	도로	소로3-228	L=248m	부분집행	'21. 12. 23.	1,548.0	668	880	2,300	2,300					2,300		2,300				-	-
96	도로	소로3-245	L=299m	미집행	'12. 3. 2.	1,794.0	-	1,794	9,299	9,299					9,299				9,299	-	-	9,299
97	도로	소로3-248	L=122m	미집행	'13. 4. 4.	732.0	-	732	2,874	2,874					2,874				2,874	-	-	2,874
98	도로	소로3-283	L=186m	미집행	'20. 12. 24.	1,116.0	-	1,116	1,026	1,026	538				488		1,026				-	-
99	주차장	주차장-84	A=1143m ²	미집행	'05. 3. 24.	1,143.0	-	1,143	6,692	6,692					6,692				6,692	-	-	6,692
100	주차장	주차장-85	A=1380m ²	미집행	'05. 3. 24.	1,380.0	-	1,380	1,132	1,132					1,132				1,132	-	-	1,132
101	주차장	주차장-112	A=1030m ²	미집행	'08. 2. 14.	1,030.0	-	1,030	7,719	7,719					7,719				7,719	-	-	7,719
102	주차장	주차장-338	A=1954m ²	미집행	'20. 12. 24.	1,954.0	-	1,954	2,975	2,975	958		1,150		867		2,975	2,975			-	-
103	공원	소공원-61	A=3754m ²	미집행	'05. 3. 24.	3,754.0	-	3,754	11,618	11,618					11,618				11,618	-	-	11,618
104	공원	소공원-145	A=454m ²	미집행	'20. 12. 24.	454.0	-	454	806	806	423				383		806	806			-	-
105	공공공지	공공공지-26	A=100m ²	미집행	'05. 3. 24.	100.0	-	100	255	255					255				255	-	-	255
106	학교	학교-295	A=9510m ²	미집행	'05. 3. 3.	9,510.0	-	9,510	136,677	136,677					136,677				136,677	-	-	136,677
107	체육시설	체육시설38	A=82930m ²	미집행	'20. 12. 24.	82,930.0	-	82,930	19,000	19,000	3,900	4,550			10,550		19,000	19,000			-	-
108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7	A=4305m ²	미집행	'20. 12. 24.	4,305.0	-	4,305	10,252	10,252	5,379				4,873		10,252	10,252			-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22-534호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2022.4.1.시행)에 따라 회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변경) 울산광역시 복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상위 법령 인용 제명 변경

- (당초)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변경)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다.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및 관련 자치법규명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 제8조)

- 직무대리규정 → 「울산광역시 복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3. 관계법령

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제12조, 제77조, 제105조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회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전자우편 : bag0417@korea.kr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회계담당관

- 전화번호 : 052)241-7301, 팩스번호 : 052)241-8689

6. 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복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하고, “직무대리규정”을 “「울산광역시 복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칙 제22조제2항”을 “훈령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22조제3항”을 “훈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규칙 제97조”를 “훈령 제77조제4항”으로 하고, “직무대리규정”을 “직무대리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을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직무대리규정”을 “직무대리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인수인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 「울산광역시 복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 「울산광역시 복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 「울산광역시 복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복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 「울산광역시 복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 「울산광역시 복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 「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 ”을 “ 「울산광역시 복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 ②(생략)</p> <p>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u>사고로 인하여</u>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u>직무대리규정에 따른다.</u></p> <p>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본청의 복구청장, 실·</p>	<p><u>울산광역시 복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p> <p>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부득이한 사유로</u> ----- ----- 「울산역시 복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p> <p>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 -----</p>

국장, 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산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른다.

② (생략)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른다.

②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

-----.

② 훈령 제12조제2항-----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 직무대리규칙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 직무대리규칙-----.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예산집행품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부단체장을 말한다), 실·국장, 실·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시·도: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시·군·구: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 ⑤ (생략)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에서는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처(국·과) 및 제1관서에서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 2. 물품 제조·구매와 관련된 경비
-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4. 민간위탁경비
-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
-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 5. 지방자치단체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6.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7.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 8.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異例)에 속하는 사항

③ (생략)

제77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은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고로 본인이 그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05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은 출납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538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3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대표자변경)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등록번호 : 제2013-3호
2. 업 소 명 : 현대자동차(주) 울산하이테크센터
3.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 317(효문동)
4. 전화번호 : 052-283-7500
5. 대 표 자 : 장재훈, 정의선, 이동석 (전 : 장재훈)
6. 검사항목
 - 정비분야 : 휘발유·LPG 분야, 경유
 - 확인검사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매연